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임헌호 의원 발의】



2025. 03. 24.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93호로 2025년 3월 10일 임헌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를 가진 구민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해 줌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더 나아가 병역명문가, 장기복무제대군인 또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의 노고에 감사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 추가(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3.12.~2025.3.1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일부개정 배경 및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의 반영,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 신설, 무료 접종으로 변경된 일부 유료 접종 종목을 삭제하여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상위법령(「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 <u>지역보건법 제25조</u> 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 <u>지역보건법 제25조</u> , 「 <u>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u> 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진단항목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다.	사.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진단항목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다.
				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¹⁾ 개정(2023.11.22.)으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 목적 규정에 해당 법규명을 추가하였으며, 별표의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에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여 상위법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 대상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9. ~ 10. 생략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u>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u> <u>10.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u> 11.·12.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 **안 제3조**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장애인 등록자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에 따르면 장기복무제대군인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20년→10년)을 통해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신설 항목의 관내 대상자 현황(2025.2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들은 950명(191가문), 관내 장애인 수는

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14,719명(심한장애 4,793/ 심하지 않은 장애 9,926명)이며

- 타 서울시 자치구 중 과반수 이상의 자치구에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걸 고려하면 해당 규정 신설은 적합한 것으로 보임.

【타 자치구 감면 규정 현황】

구분	병역명문가 규정		장애인 규정	
감면 o	18개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12개	종로,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금천, 서초, 강남, 송파, 은평
감면 x	6개	성북, 양천, 강서, 구로, 강동, 은평	12개	중, 용산, 성동, 중랑,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동작, 관악, 강동

다. 무료로 변경된 유료접종 종목(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삭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2. 유료접종	가. B형 간염 접종				2. 유료접종	가. B형 간염 접종			
	1) 성인	1ml	4,000원			1) 성인	1ml	4,000원	
	2) 소아	0.5ml	2,000원			2) 소아	0.5ml	2,000원	
	나. 장티푸스	0.5ml	5,000원						
	다. 신증후군출혈열	0.5ml	9,000원						

-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위해 국고가 투입된 백신을 확보한 경우 무료 접종하도록 하는 질병관리청의 권고사항('24년 1월)³⁾을 반영하여 별표의 유료접종 종목에서 삭제하는 내용임.

3) 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관련 안내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982호(24.1.23.),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449호(24.1.23.))

○ 종합의견

-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4)에서 수수료와 진료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⁵⁾ 개정(2023.11.22.)에 따라 본 조례안 목적 규정 및 별표에 상위법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장애인 등록자를 신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비한 것은 타 자치구 조례 입안 현황 및 감면 대상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권고로 이미 무료로 변경·운영되고 있는 접종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는 일부 개정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⁶⁾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바, 본 조례안의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의 신설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

4) 제25조(수수료 등)

-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5)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6) 제26조(협의 및 조정)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1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